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8월 23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3. 개정이유

- 2023년 6월 23일 일부개정, 2023년 12월 21일 시행된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(안 제3조의2)
- 신설된 법 제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일부개정, 2023년 12월 21일 시행된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은 법 제2조의2에 신설된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였으며(안 제3조제2항), 법 제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임(안 제3조의2).
-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